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위과정의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시행)됨에 따라 신규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과 별도 구분된 연계과정도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명예박사 수여의 근거조항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동조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석사 연계과정도 학·석사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2년 이내 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4호 개정)

나. 석·박사 연계과정도 석·박사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1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5호 개정)

다.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모두 2년 6개월 이내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6호 신설)

라. 「고등교육법」 상 명예박사 수여의 근거조항 변경사항(법 제35조 제5항→제6항) 반영(제47조 및 제52조제2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기간 : '26. 4. 6.(월) ~ 5. 18.(월)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사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

제47조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u>통합과정</u> : 2년 이내	4. ----- -- <u>통합과정 및 연계과정</u> : -- -----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u>통합과정</u> : 1년 6개월 이내	5. ----- -- <u>통합과정 및 연계과정</u> : -- --
<u><신 설></u>	6. <u>학사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u>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6항----- ----- ----- ----- ----- -----.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생략)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35조제5항</u> 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u>법 제35조제6항</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연 락 처	044-203-6850